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

신혁순 노무사 | 032-555-4852



지난 1997년 금융위기는 우리나라 기업경제에 큰 어려움을 준 것은 물론 산업현장 노동형태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다.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양산됐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유사한 형태의 노동종사자들이 증가됐다.

만일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지휘, 명령을 받으며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그 고용형태가 어떠하던지 노동법상의 근로자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자명하다. 그러나 소정의 근로는 제공하나 종속성, 근로의 계속성, 업무의 대체성 등으로 판단하건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힘든 형태의 노동종사자들이 있다. 이들도 소정의 노동을 제공하는 데에 있어 재해(업무 중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재해로부터 국가는 사회보험을 통하여 보호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전의 오랜 논의를 통하여 현재는 몇 개의 직종에 대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특례를 두어 특수 직종에 대하여 산재보험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수형태근로자도 산재로부터 보호 가능

산재법 제125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대상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함은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등 6개의 직종을 말한다.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노무를 상시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이들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판례(서울행법 2011구합4084)를 살펴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재법 제125조 제4항에 의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49조의3 제5항,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44조의5 제1항에 따라 피고(공단)에게 산재법 적용제외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피고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위 신청서를 받으면 위 시행규칙 제44조의5 제2항에 의하여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자에게 적용제외 확인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재법 제125조 제5항에 의하여 적용제외를 신청한 다음 날부터 산재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산재법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2010년 5월 31일) 그 무렵 이를 ○○에 제출하였으나, ○○은 망인이 사망한 이후(2010년 6월 15일) 피고에게 위 신청서를 팩스로 송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데, 비록 망인이 사망일 이전에 산재법의 적용제외를 받을 의사로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에 제출하였더라도 피고에게 위 신청서가 도달되지 아니한 이상 ○○에 제출한 것으로써 망인이 산재법 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망인이 작성한 위 신청서가 산재법 및 보험료징수법령에 따라 피고에게 제출된 날 다음날부터(2010년 6월 16일) 망인은 산재법 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라고 하며 또한 위 적용자의 사망경위가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요건에 해당되어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면

서 인정하였던 판례이다.

위 판례에서 재해자 망인은 사망 당시 ○○ 대리점 소속의 모집사용인으로 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보험계약 체결을 하는 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제법상 특수형태종사자에 해당되므로 대상 노무제공자가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여 관할 기관에 적용제외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이의 업무상 재해 해당요건에 부합하기만 하면 산재보상 처리가 될 수 있다.

물론 고용형태상 특수형태종사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성요소가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1/2씩 부담하며,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신청을 하였더라도 적용대상자가 될 수 있다. 즉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4대 사회보험 중 산재보험만 적용하기 때문에 산재보험료만 산정·납부하는 것이다. 사업주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를 포함하여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고 근로자분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할 수 있다. 보험료는 4개 직종별 각각의 월기준보수(고용노동부장관 고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제공 일수, 해당사업장의 개별보험료율에 의하여 산정하게 된다.

이렇게 산업재해에 있어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종사자에게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는 유의미한 부분이 있지만 아직은 강제보험이라고 할 수 없으며 여전히 사업주 및 대상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인한 임의 적용제외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법적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기도 하다. ☞